

제242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9.18.)

조례안 · 일반의안 검토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춘 곤]

목 차

1.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1

2.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7

3.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15

4.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2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9. 5.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9. 6.

2. 개정이유

-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상시고용인력센터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사문화된 규정과 법령 재기재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농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농작업 참여자의 책무를 정함(안 3조 ~ 제4조)
- 다. 상시고용인력센터의 설치 및 위치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상시고용인력센터 지원 사업 확대 신설(안 제6조)
 - 1) 숙식비, 안전용품 제공
 - 2) 마일리지 제공 등 농작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 마. 지원대상 및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제8조)
- 바. 법령 재기재 사항, 사문화 규정, 용어 등 정비(조례 전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114백만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8. 6. ~ 8. 26.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촌인력난 해소와 농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상시고용인력센터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사문화된 규정과 법령 재기재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농촌인력난 해소와 일용근로자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 할 수 있는 자치사무로 판단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22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관리 상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그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현행 「거창군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연중 안정적인 농작업 일자리를 제공하여 농작업 참여자의 생계안정과 농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서 운영하는 거창군 상시고용인력센터(이하 “인력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농업관련작업(이하 “농작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구인자(求人者)·구직자(求職者)(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부족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력센터 및 참여자의 책무) ① 인력센터에서는 농작업 참여자를 모집하여 구인·구직요청에 적합한 인력과 일자리를 알선함으로써 농촌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는 상호간의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인력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인력센터에 농작업 참여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마감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 한다.

1. 일손 부족 농가, 영농작목반, 영농법인
2. 농산물을 가공 포장하는 작업장,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2. 농작업에 따른 재해보험(농작업근로자공제)으로 국비를 제외한 군비부담금
3. 농작업 참여자 및 농작업 능력향상 교육시 안전용품 제공 등

제7조(지원신청) ① 제5조 각 호의 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제6조의 지원을 받으려면 작업 2~3일 전에 인력센터에 필요한 인력과 작업내용, 임금 등을 사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농작업 참여자들은 농작업 종료 후 인력센터에 교통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지급) 재해보험은 일·주·월 단위로 작업일 전에 가입하여야 하고, 교통비는 1개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관리·감독) ①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신청을 제한한다.

② 군수는 인력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 등 보조금 관련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거창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9. 5.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9. 6.

2. 개정이유

- 기존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개정(2017. 1. 28.)으로 삭제되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3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를 관한 사항이 기관위임 사무로 됨에 따라 그 권한의 행사를 위해 자문기관을 설치·운영 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해야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함

3. 주요내용

- 가.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7. 11.~7. 31.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되어 해당 조례는 폐지하고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 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

의에 관한 사무는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기관 위임사무에 해당함.

- 아울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 역시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안건번호	의 건 17-0113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일자	2017. 5. 12.
안건명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등 관련)				
<p>• 의견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p> <p>• 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함)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권한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p>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규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사무”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추145 판결 참조),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서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나아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 역시 기관위임사무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사무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는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남양주시장에게 위임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재검토 협의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 자문기관인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관련법령 발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2019. 4. 1] [법률 제16172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 상황을 조사하는 경우 사유시설 피해(산사태 피해는 제외한다)와 시설물별 피해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조사권한을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을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시·도지사 및 시·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한[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하여 위임받은 권한(이하 "해당 권한"이라 한다)과 관련되는 권한의 범위로 한정한다]을 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통보의 접수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통보의 접수
4.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5. 법 제6조의4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의 접수
6.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 현행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거창군 재난 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거창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자연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및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검토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검토위원회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7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에 대하여 제6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해당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 공무원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0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총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총무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총무) ①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진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인을 둔다.

② 총무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 총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거창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발의일자 : 2019. 9. 3.

나. 발 의 자 : 심재수 의원 대표발의
(심재수 · 이흥희 · 김향란 · 박수자 · 신재화 · 이재운 ·
최정환 · 표주숙 · 김종두 · 권재경 · 김태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19. 9. 6.

2. 제정이유

-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
- 다. 전기자동차 등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 마. 충전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1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환경과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9. 4. ~ 9.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대기환경의 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해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기자동차 등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과 전기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사항 등에 관한 주요내용을 잘 반영하였음.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4. "태양광자동차"란 태양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하이브리드자동차"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

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7. 삭제

8. 삭제

9.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

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 다. 그 밖에 태양광, 수소연료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 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제3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전기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

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제3항제1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천연가스자동차는 제외한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터리, 그 밖의 장치·부품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 ⑪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⑫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⑬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⑭ 제13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⑮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충전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정보관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 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⑰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9. 5.
- 나. 발 의 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19. 9. 6.

2. 개정이유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인명피해 보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농작물등 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정함(안 제3조제2항)
 -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경작지에 발생한 농작물등 피해는 보상 제외
- 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액 변경함(안 제4조)
 - 1) 현행 : 부상 또는 사망 시 최대 50만원
 - 2) 변경 :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 가) 상해 :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나) 사망 :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다. 그 밖에 법령 내용을 확인·재기재한 내용 삭제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2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5,000천원 확보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예산 범위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7. 18.~8. 7.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전부 반영함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인명피해 보상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법령이나 환경부고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농작물 피해보상액 500만원, 유가족 사망위로금 1,000만원)에서 거창군의 특성에 적합한 사항과 세부사항 등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1. 질의요지

00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에 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3항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2. 의견

이 사안의 경우 00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에 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5조제3항과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이 사안은 00군에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이라 함) 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9-59호를 말하며, 이하 “환경부고시”라 함) 제15조제3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이하 “거창군조례”이라 함) 제9조제4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

살피건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함) 제12조 본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보상비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그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환경부고시 제15조에서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을 500만원까지로 규정(제1항)하고, 사망의 경우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등을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규정(제3항)하는 등 피해보상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입법에 관한 일반론으로,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에는 재기재한 내용의 법령이 개정·폐지되었음에도 같은 내용을 규정한 조례가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례에 단순히 다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2016. 12. 9. 의견제시 16-0300 사례 참조).

또한,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행정관청에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1헌마25 결정 참고), 환경부고시가 비록 그 제정형식이 행정규칙이라고 할지라도 야생생물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을 한다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규칙을 근거로 해당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00군이 00군조례에서 법령이나 환경부고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00군의 특성에 적합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거나 세부사항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고시의 규정 내용으로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체계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환경부고시 제15조제3항의 규정 내용을 00군조례에 다시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법령 발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10. 16] [법률 제15835호, 2018. 10. 16, 일부개정]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8. 7. 10] [대통령령 제28578호, 2018. 1. 9, 일부개정]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2. 7. 31.]

□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시행 2019.3.21] [환경부고시 제2019-59

2019. 3. 21.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자력포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포획시설을 대여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자와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자)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하"농업인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림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등은 제외한다.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지원 우선순위)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우선순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5. 기타 영농규모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의 요건) 설치비용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기타 자치단체장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원받기를 원하는 연도의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업·임업·어업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철거 또는 일부를 훼손하고자 할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5일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 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림사업시행지침」(농림부 지침)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기준 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경우, 근거서류를 제시하면 지원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조정의 범위는 30 이내로 한다.
3.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출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복수의 업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일위대가 산출근거서류(견적서, 원가계산서 등)를 받아서 산출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을 공급하는 업체가 유일한 경우에는 단수 견적서도 가능하다.

제9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11월말까지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피해예방시설비용 산출내역서를 취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국고보조금교부 신청서에 따라 해당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절차는 별표에 따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 분담율 등) ① 해당 시·도의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금액은 해당연도 예산에 해당 시·도의 사업비 배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피해예방시설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및 관리계획안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안을 평가한다.

③ 피해예방시설비용의 분담률은 국가 30, 지방자치단체 30, 해당 농업인등 40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3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11조(포획시설 대여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유해야생동물 자력 포획을 지원하기 위해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포획시설을 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의 해당 포획시설 수요 및 유지·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대여에 필요한 적정한 물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획시설 대여를 위해 대상자 선정, 대여 방법 및 절차, 대여 포획시설 관리 및 그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체 실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포획시설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고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12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의 보상대상은 농업·임업·어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

라 한다)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13조(피해보상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자나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가 시행규칙 제1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7호 서식 또는 제7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자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 사망의 경우 사망위로금,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5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16조(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피해보상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 제3항에 따른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역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심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보험 가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또는 농업·임업 및 어업상 피해 보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보험의 운영 지원)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시·군·구의 보험을 포괄하여 가입할 수 있다.

제4장 재원확보 등

제21조(재원확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예방시설설치비 및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② 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수렵장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시·군·구는 법 제50조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수렵장 운영 수입금의 일부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설치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조례제정) ①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조례가 있는 경우 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규정을 자체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다.

제2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 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59호, 2019. 3.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생동물”이란 야생포유류, 야생조수, 독사류 등을 말한다.
2.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산림작물을 말한다.
3. “농작물 등 피해”란 농업인·임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직접 재배·경작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4. “인명피해”란 농업인 등이 군 내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재배하는 중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5. “피해농업인 등”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일 기준 군 내에서 농작물 등을 직접 경작·재배하는 중에 농작물 등과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요건) 이 조례는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등 피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 청구를 한 피해농업인 등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된 피해면적에 피해율과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의 100분의70을 곱하여 산출하고, 산림작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 농작물의 피해면적은 실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업인 등에게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동일 경작지에 대한 지급금액이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피해보상액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작물별 생육 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 이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범위 초과, 중복지원 등으로 피해보상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6조(농작물 등 피해 신고 및 조사) ① 피해농업인 등은 농작물피해 현장을 보존하고, 농작물 등 피해 발생사실을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농작물 등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농업인 등 입회하여 농작물 등 피해 사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절차) ①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정밀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보상액을 산정하고 그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을 피해농업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피해농업인 등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그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피해농업인 등에게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보상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순서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70세 이상 노인
4. 그 밖에 영세농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인명피해 신고 및 조사) ① 피해농업인 등 또는 그 가족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고 접수 후 피해마을 이장과 피해농업인 등이나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이하 같다) 입회하여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명피해액 산정 및 지급기준) ① 피해액 산정은 인명피해에 대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을 말한다.

② 피해지원금은 직접 피해농업인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 등이 사망하였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지급한다.

③ 피해농업인 등이나 그 가족은 피해지원금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④ 야생동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시 지원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의 지원)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의 세부기준 및 방법·절차 등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유해야생동물 포획지원 등) 군수는 관내 농작물 등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